

제2692호
2019. 11. 1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138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2
 제2019-139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제2019-140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제2019-141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제2019-142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7

● 공 고

제2019-854호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제공람 공고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38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에「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및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나길 31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아래 열람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 로 명 고시일	
신당동 349-233	동호로8나길 31	2019.11.13.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2010.06.30.	
중림동 398-11	중림로2길 12	2019.11.13.	중림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2010.06.30.	
오장동 90-8	마른내로 106	2019.11.13.	옛 지명인 건천동에서 유래
		2010.05.26.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종전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폐지사유
황학동 1776	난계로17길 60-15	난계로21길 63	2019.11.13.	주 출입구 변경
장충동2가 197	동호로 257-10	동호로 257-10	2019.11.13.	건물군 분할
		동호로 257-8	2019.11.13.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신당동 349-233	동호로8다길 16	2019.11.13.	건물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중림동 398-11	중림로2길 12	2019.11.13.	건물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오장동 90-8	마른내로 106	2019.11.13.	건물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3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65-2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24-4	2019. 11. 13.	다동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5. 26.	행정구역 명칭 반영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65-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24-6	2019. 11. 13.	다동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5. 26.	행정구역 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40 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24-4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65-2외 1필 (165-3)	2019.11. 13.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41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2-1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38 외1필(-95)	2019.11 13.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4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38 외 1필(-9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2-13	2019.11. 13.	다산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4. 22	조선후기 실학자 정양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3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42-15	2019.11. 13.	다산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4. 22	조선후기 실학자 정양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854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공고 제2017-718호(2017.10.18.)로 공람 공고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남대문로5가 395일대	91,872.5	0.1	91,872.6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합 계				91,872.6	70,646.3	9,655.7	-	-
기정	양동	1	남대문로5가 581번지	5,178.4	3,828.4	1,350.0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2	남대문로5가 631번지	6,827.4	5,435.4	1,392.0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3	남대문로5가 827번지	7,446.1	5,346.5	2,099.6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기정	양동	4-1	남대문로5가 500번지	3,592.9	2,429.4	1,163.5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4-2·7	남대문로5가 395번지일대	20,350.7	20,016.2	334.5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시행중
기정	양동	5	남대문로5가 267번지	8,668.8	6,107.1	2,561.7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기정	양동	6	남대문로5가 526번지	3,835.8	3,081.4	754.4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완료
변경	양동	6	남대문로5가 526번지	3,835.5	3,081.1	754.4	-	완료
기정	양동	8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4,827.0	4,827.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양동	8-1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3,740.4	3,740.4	-	-	존치지구
	양동	8-2	남대문로5가 535번지 일대	1,676.1	1,676.1	-	-	시행지구
기정	양동	9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12,888.0	12,888.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존치지구
변경	양동	9-1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10,583.4	10,583.4	-	-	존치지구
	양동	9-2	남대문로5가 567번지 일대	3,013.3	3,013.3	-	-	존치지구
	양동	9-3	남대문로5가 575번지	97.2	97.2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4	남대문로5가 555번지	97.1	97.1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5	남대문로5가 554번지	96.9	96.9	-	-	소단위 관리지구
	양동	9-6	남대문로5가 542번지	178.6	178.6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양동	1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2,099.0	2,099.0	-	건설부고시 제285호('78.9.26)	미시행
변경	양동	10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2,815.2	2,815.2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신설	양동	11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704.9	704.9	-	-	소단위 정비지구
신설	양동	12-1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105.1	105.1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2	남대문로5가 621번지	128.9	128.9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3	남대문로5가 622번지	741.5	741.5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4	남대문로5가 623번지	150.8	150.8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5	남대문로5가 624번지	69.7	69.7	-	-	소단위 관리지구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신설	양동	12-6	남대문로5가 625번지	110.8	110.8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양동	12-7	남대문로5가 626번지	92.3	92.3	-	-	소단위 관리지구
계획기반시설(기존 국공유지 포함)				11,570.6	-	-	-	-

※ 1989.7.1. 재개발사업 완료시 무상귀속된 제7지구의 공공용지 부담면적 제외(6,477.2㎡)

3)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6지구	6지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 사업지구 획지면적 변경	· 획지면적 오차 정정	-
변경	8지구	8-1지구, 8-2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일대	· 존치지구, 기결정도로 → 존치·시행지구로 분할	· 현황여건과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획지분할 및 존치·시행지구 지정	-
변경	9지구	9-1지구 ~ 9-6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일대	· 존치지구 → 일부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현황여건을 고려 기존 존치지구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10지구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일대	· 미시행지구 → 보존지구(보전정비형) 전환	·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상 근현대건축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지구(보전정비형)로 전환	-
신설	공원	11지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일대	· 기결정공원 → 소단위정비지구 전환	· 현황여건을 고려(쪽방입지) 기결정된 공원부지 중 일부 소단위정비지구로 전환	-
신설	공원	12-1지구 ~ 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일대	· 기결정공원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현황여건을 고려(저층주거 다수밀집) 기결정된 공원부지 중 일부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1,872.5	증 0.1	91,872.6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5,814.1	감 4,587.8	21,226.3	23.1	-
	도 로	23,095.8	감 5,200.5	17,895.3	19.5	-
	공 원	2,718.3	증 161.6	2,879.9	3.1	-
	사회복지시설	-	증 451.1	451.1	0.5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시 장	(1,719.0)	감) (1,719.0)	-		-	-	
소 계	66,058.4	증) 4,587.9	70,646.3		76.9	-	
획지	1지구	3,828.4	-	1지구	3,828.4	-	일반정비지구
	2지구	5,435.4	-	2지구	5,435.4	-	일반정비지구
	3지구	5,346.5	-	3지구	5,346.5	-	일반정비지구
	4-1지구	2,429.4	-	4-1지구	2,429.4	-	일반정비지구
	4-2·7지구	20,016.2	-	4-2·7지구	20,016.2	-	일반정비지구
	5지구	6,107.1	-	5지구	6,107.1	-	일반정비지구
	6지구	3,081.4	감) 0.3	6지구	3,081.1	-	일반정비지구
	8지구	4,827.0	증) 589.5	8-1지구	3,740.4	-	존치지구
				8-2지구	1,676.1	-	일반정비지구
	9지구	12,888.0	증) 1,178.5	9-1지구	10,583.4	-	존치지구
				9-2지구	3,013.3	-	존치지구
				9-3지구	97.2	-	소단위 관리지구
				9-4지구	97.1	-	
				9-5지구	96.9	-	
				9-6지구	178.6	-	
	10지구	2,099.0	증) 716.2	10지구	2,815.2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1지구	-	증) 704.9	11지구	704.9	-	소단위 정비지구
	12-1지구	-	증) 1,399.1	12-1지구	105.1	-	소단위 관리지구
	12-2지구			128.9	-		
12-3지구	741.5			-			
12-4지구	150.8			-			
12-5지구	69.7			-			
12-6지구	110.8			-			
12-7지구	92.3			-			

※ ()는 정비기반시설 시장으로 9-1지구내 지하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에서 제외
 ※ 7017서울로에서 6지구(대우재단빌딩)와 8지구(메트로타워)로 각각 연결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총 46.86㎡)은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에서 제외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872.5	증) 0.1	91,872.6	100.0	-
일반상업지역	91,872.5	증) 0.1	91,872.6	100.0	

※ 금 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47	방화지구	중구 봉래동2가 128 일대	7,009.68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1	10~4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70	양동101-2	양동42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중로	1	201	10~4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70	남대문로5가 310	남대문로5가 693	-	-	
기정	중로	1	21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7	양동737-1	양동34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중로	1	21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1	남대문로5가 500-2	남대문로5가 631-1	-	-	
변경	중로	3	1	13~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9	남대문로5가 631-1	남대문로5가 823	-	-	
변경	소로	2	4	8~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4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611	-	-	
기정	중로	1	212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06	양동310	양동72-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중로	1	212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52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521	-	-	
변경	중로	3	2	1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4	남대문로5가 581-1	남대문로5가 644-2	-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0	양동552	양동55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소로	2	1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0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823	-	-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0	양동552	양동552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변경	소로	2	2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0	남대문로5가 823	남대문로5가 823	-	-	
신설	소로	3	1	2~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4	남대문로5가 580-1	남대문로5가 579	-	-	
기정	소로	1	-	10.3 (6.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810 (3.15)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 (2016.5.19.)	7017 서울로
기정	소로	1	-	10.3 (4.15)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810 (6.88)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	중구고시 제2019-47호 (2019.5.2.)	7017 서울로
폐지	소로	2	3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70	양동283	양동285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 ()는 양동구역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01	중로1-201	· 도로기종점 주소변경	· 당초 구지번으로 결정된 도로기종점 주소 정정
중로1-211	중로1-211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연장 : 187m⇒81m	· 20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의 단차 및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 폐지 및 폭원 축소 (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중로3-1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13~15m - 연장 : 187m⇒69m	
	소로2-4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8~10m - 연장 : 187m⇒54m	
중로1-212	중로1-212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연장 : 406m⇒152m	· 20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폐지 및 폭원 축소 (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중로3-2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20m⇒13m - 연장 : 406m⇒64m	
소로2-1	소로2-1	· 도로기종점 주소변경	· 당초 구지번으로 결정된 도로기종점 주소 정정
소로2-2	소로2-2	· 도로기종점 주소변경	· 당초 구지번으로 결정된 도로기종점 주소 정정
-	소로3-1	· 소로신설 - 폭원 : 2~6m - 연장 : 104m	· 기결정공원 및 도로부지의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라 현황 도로를 감안한 도로 신설
소로2-3	-	· 도로폐지	· 기결정도로의 획지전환(10지구)에 따른 도로폐지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1	연결통로1	남대문로5가 526 일대	길이	3.15m	-	3.15m	서울시고시 제2016-139 호 (2016.5.19)	6지구 (변경없음)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기정	소로1	연결통로3	남대문로5가 537 일대	면적	18.3㎡	-	18.3㎡	서울시고시 제2019-47호 (2019.5.2)	8-1지구 (변경없음)
				길이	6.88m	-	6.88m		
				폭	4.15m	-	4.15m		
				높이 (지표면기준)	0~8.92m (-8.57~8.92m)	-	0~8.92m (-8.57~8.92m)		
				면적	28.56㎡	-	28.56㎡		

※ 연결통로1 : 7017서울로와 양동6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 연결통로3 : 7017서울로와 양동8-1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718.3	증) 161.6	2,879.9	-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2,718.3	감) 2,718.3	-	건설부고시 제380호 (1978.11.30.)	-
변경	①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	증) 2,539.4	2,539.4	-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남대문로5가 627번지 일대	-	증) 340.5	340.5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기결정 공원 축소 - 위치 : 남대문로5가 541-3번지 일대 - 면적 : 2,718.3㎡ → 2,539.4㎡	· 단차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원 축소(일부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②	공원	· 소공원 신설 - 위치 : 남대문로5가 627번지 일대 - 면적 : 340.5㎡	· 건물 입지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및 도로로 기결정된 부지를 소공원으로 계획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	증) 451.1	451.1	-	-

(2) 사회복지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60이하	600이하	50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복합계획 가능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422호, 2010.12.30.)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위치 :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 면적 : 451.1㎡	· 현재 노인정으로 이용중인 기결정 도로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대우시장	봉래동2가 128번지 일대	1,719.0	감) 1,719.0	-	서울특별시고시 제79호 (1977.3.26.)	-

- 시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시장	· 위치 : 봉래동2가 128번지 일대 · 면적 : 1,719.0㎡	· 노후 가속화 및 경쟁력의 상실로 폐지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 2, 3, 4-1, 4-2·7, 5, 6, 8-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11지구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9-3 ~ 9-6, 12-1 ~ 12-7지구	660㎡이하
존치지구	· 8-1, 9-1, 9-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0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존치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1, 2, 3, 4-1, 5, 6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4-2·7지구	숙박, 업무	시행지구
③	· 8-2지구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시행지구

※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 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 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
②	소단위관리지구				

※ 저층부 지정용도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기준 충족시 지정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봄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단, 종교집회장 및 고시원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노유자시설 : 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숙박시설 :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

다) 존치지구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8-1지구	업무	존치지구
②	· 9-1지구	업무	존치지구
③	· 9-2지구	공공업무	존치지구

라)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10지구	종교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지구	-	60%이하	완료지구
	4-2·7, 8-2지구	-	(심의통해 완화가능)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5층이하 : 80% 5층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9-3 ~ 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80%이하	-
	12-1 ~ 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8-1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4-2·7, 8-2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9-3 ~ 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600	-	α	-
	12-1 ~ 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8-1지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600	800	α	-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600	800	α	-

(3)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1, 2, 3, 4-1, 5, 6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4-2·7, 8-2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618번지 일대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9-3 ~ 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30m이하	-
	12-1 ~ 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존치지구	8-1, 9-1, 9-2지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90m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지구	남대문로5가 544번지	9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완화 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3,828.4	남대문로5가 581번지	업무	55.2 ~59.8	944 ~988	108.7	완료지구
기정	2지구	5,435.4	남대문로5가 631번지	업무	37.8 ~41.4	712.1 ~783.3	99.5	완료지구
기정	3지구	5,346.5	남대문로5가 716번지 일대	업무,주거	50.0이하	1,000.0이하	120이하	완료지구
기정	4-1지구	2,429.4	남대문로5가 500번지	업무	47.0이하	615.0이하	84.0이하	완료지구
기정	4-2·7지구	20,016.2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숙박, 업무	59.5이하	540.0이하	86.0이하	시행지구
기정	5지구	6,107.1	남대문로5가 267번지	업무, 판매	38.0이하	760.0이하	84.7	완료지구
기정	6지구	3,081.4	남대문로5가 526번지	업무	46.0이하	715.0이하	72.0이하	완료지구
변경	6지구	3,081.1	남대문로5가 526번지	업무	60.0이하	31.0이하	72.0이하	완료지구
기정	8지구	4,827.0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업무	-	-	-	존치지구
변경	8-2지구	1,676.1	남대문로5가 535번지 일대	업무	60.0	600/800/α	90.0이하	시행지구

※ 6지구 소유자의 정비계획변경 제안(16.11.18)에 따른 변경

⇒ 완료지구 리모델링 세부기준 적용 (문화시설 292.70㎡도입, 건폐율 46%→60%, 용적률 715%→731%)

나) 소단위정비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11지구	704.9	남대문로5가 614번지 일대	-	(5층이하) 80이하 (5층초과) 60이하	600/800/α	50이하	-

다)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9-3지구	97.2	남대문로5가 575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9-4지구	97.1	남대문로5가 555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9-5지구	96.9	남대문로5가 554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9-6지구	178.6	남대문로5가 542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1지구	105.1	남대문로5가 620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2지구	128.9	남대문로5가 621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3지구	741.5	남대문로5가 622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4지구	150.8	남대문로5가 623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5지구	69.7	남대문로5가 624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6지구	110.8	남대문로5가 625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12-7지구	92.3	남대문로5가 626번지	-	80이하	600/-/α	30이하	-

라) 존치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8지구	4,827.0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	-	-	-	존치지구
변경	8-1지구	3,740.4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	-	-	-	존치지구
기정	9지구	12,888.0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	-	-	-	존치지구
변경	9-1지구	10,583.4	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	-	-	-	-	존치지구
	9-2지구	3,013.3	남대문로5가 567번지 일대	-	-	-	-	존치지구

※ 존치지구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마)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기정	10지구	2,099.0	남대문로5가 544번지	-	-	-	-	미시행
변경	10지구	2,815.2	남대문로5가 544번지	종교	60이하	600/800/α	9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완화가능

■ 6지구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양동구역	3,081.4	-	3,081.4	남대문로5가	업무	46 이하	715 이하	72 이하	-
변경	제6지구	3,081.1	-	3,081.1	526번지	업무	60 이하	731 이하	72 이하	-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 완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리모델링(증축 등) 관리방안 세부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신규도입(292.70㎡)에 따른 용적률 완화(연면적 10% 이내) · 용적률 = 기존용적률 + 완화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적률 : 715% - 완화 용적률 = (용도도입면적 / 대지면적) × 기존용적률 × 보상계수(0.5) $= (292.70\text{㎡}(\text{문화복지시설}) / 3,081.1\text{㎡}) \times 665\% \times 0.5 = 31.58\%$ <p>▶ 상한용적률 = 715% + 31.58% = 746.58%(계획 731.0% 이하)</p>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일반정비, 존치, 보존지구 :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계획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계획
- 소단위관리지구
 - 소단위관리지구는 협소한 도로의 가로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 미지정

<고층부 벽면한계선>

- 소단위관리지구 :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2m지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존치지구	· 한강대로, 퇴계로, 소월로, 소월로2길, 후암로, 8-2 서측도로변 : 3m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지구	· 11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1m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소단위관리지구	· 9-3, 9-4, 9-5, 9-6, 12-1, 12-2, 12-3, 12-4, 12-5, 12-6, 12-7지구 - 3층 이상의 건축물 : 대지경계선에서 2m 지정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소단위정비지구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 양동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9.5%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 등으로 부담
 -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존치·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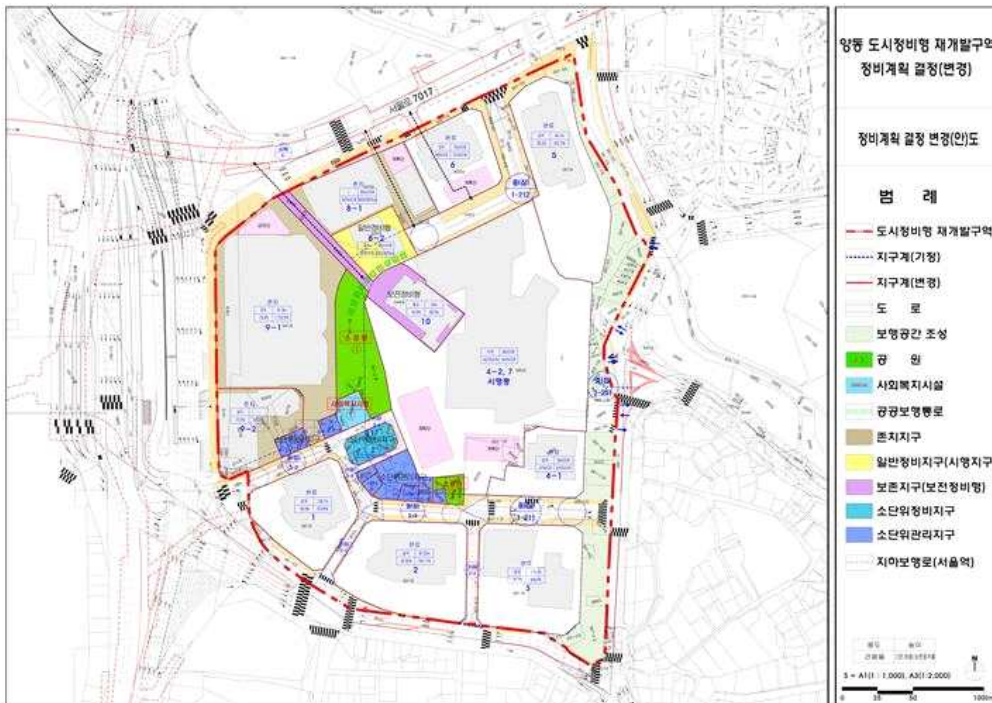
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19.11.13. ~ 2019.12.13. (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6층) (☎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



※ 6지구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